

DHS 080100 정 관

제정	1962. 09. 20	개정	1979. 03. 15	개정	1987. 03. 27
개정	1967. 12. 28	개정	1979. 07. 05	개정	1989. 03. 30
개정	1968. 02. 07	개정	1979. 08. 27	개정	1990. 02. 09
개정	1968. 09. 03	개정	1979. 09. 08	확인	1993. 07. 31
개정	1969. 05. 23	개정	1980. 01. 09	개정	1994. 03. 19
개정	1970. 02. 09	개정	1980. 04. 28	개정	1995. 03. 25
개정	1970. 11. 11	개정	1980. 06. 23	개정	1996. 10. 01
개정	1973. 01. 20	개정	1980. 07. 07	개정	1997. 03. 15
개정	1973. 02. 03	개정	1980. 09. 13	개정	1997. 10. 01
개정	1974. 01. 25	개정	1980. 11. 11	개정	2000. 03. 28
개정	1975. 09. 15	개정	1980. 12. 05	개정	2001. 03. 23
개정	1976. 03. 20	개정	1980. 12. 17	개정	2002. 03. 22
개정	1976. 07. 19	개정	1981. 02. 27	개정	2005. 03. 18
개정	1977. 01. 04	개정	1981. 04. 14	개정	2006. 03. 17
개정	1977. 06. 30	개정	1981. 06. 26	개정	2007. 03. 16
개정	1977. 11. 01	개정	1982. 02. 17	개정	2009. 03. 27
개정	1978. 01. 04	개정	1982. 09. 30	개정	2010. 03. 26
개정	1978. 01. 07	개정	1983. 02. 04	개정	2011. 03. 25
개정	1978. 01. 17	개정	1983. 02. 04	개정	2012. 03. 30
개정	1978. 05. 20	개정	1984. 02. 27	개정	2013. 03. 29
개정	1978. 09. 18	개정	1984. 10. 04	개정	2013. 08. 19
개정	1978. 10. 20	개정	1985. 12. 17	개정	2014. 03. 28
개정	2019. 03. 28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두산중공업주식회사라 부르고 영문으로 DOOSA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LTD. 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아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내외 무역업
2. 광산개발 및 판매업
3. 토사석채취업
4. 건축자재생산 및 가공판매업
5. 하역업
6. 국내외 상사의 대리업무
7.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8. 주단조품, 제철, 제강품의 제조 및 판매업
9. 냉동기 및 공기조절기 제조, 수리, 판매업
10. 각종 중기,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및 그 부분품의 제조, 판매, 정비 및 임대
11. 조선업, 조기업 및 의장품 제조업
12. 집진기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 및 판매
13. 해외공사수주업 및 해외종합건설업

14. 발전설비, 제철, 제강설비, 시멘트 제조설비, 석유화학설비, 해양설비, 담수설비, 상하수처리설비, 공장 용폐수처리설비, 물의 재이용 설비, 위생설비, 배수설비, 폐수처리를 통한 **Energy** 재이용 설비, 기타 산업설비의 제조, 기계공사 및 판매업
15. 중전기장치 제조 및 판매업
16. 철강재 및 철강구조물 제작, 설치공사업
17.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18. 주택건설사업
19. 산업설비용역업
20. 전문기술용역업
21. 토목건축, 도로포장, 조경, 전기, 전기통신 및 산업설비공사업
22. 해외종합건설용역업
23. 전력설비, 담수설비의 설치 및 개보수
24. 소방설비업
25. 폐기물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의 설계 자문, 설계시공 및 처리사업
26. 감리용역업(건설종합, 전기종합, 소방)
27. 발전 및 전기판매업
28.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의 수출입, 저장 및 판매와 그 부산물의 정제, 판매업
29.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인수기지 건설, 운영업
30. 석유제품생산 및 판매업
31. 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 및 항만개발, 준설, 매립업
32. 전기의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34. 보관 및 창고업
35. 관광숙박업
36. 시설물 대여업
37. 주차장 운영업
38. 태양, 풍력, 지열에너지 기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
40. 위 각호 사업과 연관된 투자 및 부대사업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이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osanheavy.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 억주로 하고 1 주의 액면가액은 5,000 원으로 한다.

제 6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①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과 기명식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7 조(배당우선주식)

-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의 2(전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의 3(상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주청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⑦ 제 7 조의 2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7 조의 4(의결권배제주식)

-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제 2 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의 규정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현물출자,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9 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이사, 감사, 피용자를 의미하며, 상법 제 542 조의 3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상법 제 542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제 542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제 542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이사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10 년까지의 기간 중 부여시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정년을 제외한다)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주권 불소지)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삭제

제 3 장 사 채

제 15 조(사채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의 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7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사채발행의 경우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8 조(총회의 종류, 소집시기 및 소집권자)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매일경제 신문과 동아일보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9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로 한다.

제 21 조(의결권)

이 회사의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21 조의 2(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2 조(의결정족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22 조의 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제 1항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주주총회 개시 전에 위임장 등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 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요령 및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 회사에 보존한다.

제 5 장 이사 및 이사회

제 26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6인 이내로 하고, 그 중 일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로 한다.

제 27 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9 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30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인 또는 이사 아닌 회장, 부회장, 사장을 선임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1 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이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직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제 2 항 소정의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 34 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5 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 조(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내부거래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29 조, 제 3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34 조 및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 34 조 제 1 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 37 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회는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38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⑥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이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9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0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1 조(사업년도 및 결산)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 42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 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4 조(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제 7 조의 2 의 전환주식, 제 7 조의 3 의 상환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4 조의 2(이익소각)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44 조의 3(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6. 당해사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5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997.10. 1)

제 1 조(정관의 개정)

이 회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법 제 434 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2 조(규정외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3 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7. 10. 1 부터 시행한다.

제 4 조(초대사장의 선임)

① 이 회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 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사장후보의 추천을 위하여 임시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 정관 제 29 조, 제 30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초대사장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를 “비상임이사내정자”로 하고 “이사회”를 “비상임이사내정자회의”로 한다.

제 5 조(초대비상임이사 임기)

본 정관 시행 후 이 회사의 최초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3 군으로 분류하여 1 군이사의 임기는 1년, 2 군이사의 임기는 2년, 3 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 군이사는 2인, 2 군이사는 3인, 3 군이사는 3인으로 한다.

제 6 조(본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 감사임기 및 이사회 효력)

① 본 정관 개정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장, 이사 및 감사는 특별법에 의한 사장,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상임 및 비상임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 이사회가 개정된 정관의 이사회(경영전략위원회 포함)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정)

이 회사는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 주주가 구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증권거래법에서의 “우리사주조합”을 의미한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부 칙(2000.3. 2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9 조 제 2 항은 주식상장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경과규정)

이 회사는 주식상장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3 조(경영공시)

이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경영의 주요정보를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공시제도를 시행한다.

부 칙(2001.3. 2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 22)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1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1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1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3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8 조 ①항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6 조의 3 및 제 17 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